

공정거 주



법 입 니 다



MICHAEL R. BLOOMBERG, 시장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PATRICIA L. GATLING, 위원 / 위원장

영어/ 한국어 - 2012

뉴욕시 인권 위원회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공정 주거. 법입니다.

“공정 주거(Fair Housing)”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 살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공정 주거법은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며 다양한 그룹의 주택 선택을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차별적 관행을 금지합니다.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5 개 보로(borough)에서 그러한 법을 집행합니다.

공정 주거법 (FAIR HOUSING LAW)

뉴욕시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은 뉴욕시 내에서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과 관련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다양한 구성원 그룹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장려합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상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적 정체성 및 성희롱 포함), 신념, 장애, 성적 성향, 결혼 여부, 파트너십 상태, 외국 국적 신분 또는 시민권 지위, 나이, 합법적 직업에 근거한 차별이나 자녀가 함께 살고 있거나 살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 따른 주거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보호 대상 클래스(protected classes)”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호 대상 클래스에 근거한 불법적인 관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 거부.
- 🏠 주택 가용성에 대한 허위 진술.
- 🏠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해 다른 조건 또는 특권 설정.
- 🏠 다른 주택 서비스 또는 시설 제공.
- 🏠 보호 대상 클래스에 근거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을 나타내는 차별적 광고 또는 홍보물 게재. 예를 들어, “무자녀” 또는 “기혼자 부부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는 차별성 광고입니다.
- 🏠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수 용 장치 제공을 거부하는 것.

2008년 3월 개정된 시 인권법은 “어떠한 합법적인 수원”을 주택임대차에서 일종의 보호받는 계층으로 추가한다.



- ☛ 잠재적 주택 구매자나 세입자를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근거해 특정 지역으로, 또는 특정 지역을 피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
- ☛ 금전적 이익 목적으로 민족, 인종, 또는 기타 인구 통계학 상의 변화(“블록버스팅(block-busting)”)를 이용해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판매 압력을 가하는 것.
- ☛ 특정 개인(들)이 공정 거주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돕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들)을 위협, 강압 또는 협박하는 것.

공정 대출 관행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은행, 모기지 브로커 및 기타 융자

제공자가 차별적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대출 관행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모기지 융자 대출을 거부하는 것.
- ☛ 융자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
- ☛ 다른 이자율, 점수, 수수료 등과 같이 융자에 대해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부가하는 것.
- ☛ 자산 평가시 차별하는 것.
- ☛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기존 방식 모기지를 거부하는 것(“레드라이닝(redlining)”).

고리대금식 융자는 기존 방식 모기지 시장에서 거절당하거나 재무 지식이 얇은 대출 신청자들을 이용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고리대금식 융자 제공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주택 구매, 주택 수리, 또는 주택 개조 융자를 공격적으로 선전-판매합니다. 소비자 및 평등 신용법은 고리대금식 융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식 융자는 주택 소유주의 자산을 서서히 빼앗고, 수입이 많지 않은 가정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이자율과 상환액을 부과합니다. 고리대금식 융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인권위원회(CCHR)의 “여러분의 집을 지키십시오”를 참고하십시오.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REASONABLE ACCOMMODATION)

건물 소유주, 조합 및 콘도미니엄 이사회는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해당 수용 장치가 건축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금전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이유 모두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에는 주 출입구에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램프(진입 경사로)를 설치한 다거나 화장실에 손잡이 봉을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 시각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서비스 동물(안내견 등)을 키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주차 공간을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비어있는



1층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과 같이 정책 또는 규정 상의 변경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수용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여러분은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수용 장치 유형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는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상의 제한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의료 서비스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에게 여러분의 의료 기록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램프(진입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거주자 아파트 내부에 손잡이 봉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편함 높이를 낮추는 등과 같은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차별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장애 관련 민원은 정식 고발전 개입을 통해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뉴욕시 인권 위원회(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정식으로 고발하도록 장려됩니다(9 페이지 참고). 장애인 접근 기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CCHR)의 *평등 접근 기회: 법입니다(Equal Access: It's The Law)*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유형

차별적 대우

(Disparate Treatment)

모든 차별 중에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차별은 보호 대상 클래스 내에서의 구성원 자격 때문에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적 대우(disparate treatmen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상황에서, 주택 관리인이 도미니카인 세입자의 집은 수리해 주고, 중앙 아메리카인 세입자의 집은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실재 또는 인식상의 출신 국가에 근거한



의도적인 형태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적 괴롭힘은 개인의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적 성향 또는 기타 보호 대상 클래스에 근거한 것이라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합니다. 차별적 괴롭힘에는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을 조성하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코멘트 또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성희롱은 흔한 형태의 차별적 괴롭힘입니다.

차별적 효과(Disparate Impact)

차별적 효과는 차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겉보기에 중립적인 듯 보이는 정책이 특정 보호 대상 그룹에 대해 불균형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는 차별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 관련 상황에서, 발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 수혜 주택 또는 그룹 주택을 금지하는 구역 지정 조례는 불법인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같은 정책의 시행 결과가 소수 민족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 차별적 효과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예로 가정내 소란 또는 학대와 관련된 세입자들은 퇴거시킨다는 무관용 정책이 있는데 그 이유는 90% 이상의 가정 폭력 희생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결국에 가서는 보호 대상 클래스인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주택의 유형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뉴욕시 내에 있는 대부분 종류의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거주 신청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됩니다:

- ☛ 사유 주택.
- ☛ 공공 또는 정부 보조금 수혜 주택.
- ☛ 조합 및 콘도미니엄.
- ☛ 거주용 호텔(임시 숙소용 호텔은 공공 시설 장소로 간주됩니다).
- ☛ 2가구 소유주 거주 주택이고, 그 소유주가 광고나 공고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임대 아파트의 임대 가능성을 알릴 경우.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 내부(예: 개인의 아파트 또는 하숙방 내부)에 있는 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부 제한에 따라 노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주택과, 성별 제한적인 기숙사 유형의 거주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차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사자

주거 시설을 임대, 판매, 또는 주거 시설의 임대 또는 구매 신청자를 상대할 권한이 있는 일체의 개인, 또는 주거 시설의 거주자는 불법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 소유주, 관리인, 임대 및 관리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조합 및 콘도미니엄 이사회 회원이 포함됩니다. 차별적 광고를 게재하는 신문사는 차별적 제한을 전달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데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은행, 모기지 중개인, 보험 회사, 감정인 등과



부동산

본 신문에 게재되는 일체의 부동산 광고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유무, 가족 상태,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일체의 선호”, 제한 또는 차별, 또는 그러한 선호, 제한 또는 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1968년 연방 공정 주거법(Federal Fair housing Act of 1968)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신문은 해당 법에 어긋나는 부동산 광고는 절대 고의로 받지 않습니다. 본 신문은 이로써 본 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거주지 광고는 평등 기회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는 사실을 본 신문 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차별 신고는 수신자 부담 1-800-689-9777번으로 HUD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자를 위한 수신자 부담 번호는 1-800-927-9275번입니다. 또는 212-346-7600번으로 Anti Discrimination of New York(뉴욕 5 개 보로(boro)의 Fair Housing Agency)에 연락하시거나, 뉴욕 인권 위원회 핫라인 212-306-75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대출 기관들 또한 주택 관련 차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와 공정 주거 구별하기

공정 주거를 세입자 권리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정 주거는 여러분의 실제 또는 인식 상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성적 정체성, 성희롱 포함), 신조, 장애, 성적 성향, 결혼 여부, 파트너십 상태, 외국 국적 신분, 또는 시민권 지위, 나이, 합법적 직업을 근거로, 또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거나 살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 주택의 판매, 임대

또는 자금 융자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 주거는 차별적 대우가 보호 대상 클래스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임대세, 건물 서비스, 또는 수리와 같은 건물 소유주/세입자 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세입자 권리는 거주 적합성 보증(Warranty of Habitability), 임대세 지불, 임대 계약 갱신 등과 같은 건물 소유주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의 행동에 개인의 보호 대상 클래스, 차별적 희롱,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의 거부 등에 근거한 차별적 대우가 개입된 경우, 이는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와 주거 차별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 ☞ 건물 소유주가 임대 신청자에게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장애인이 아닌 신청자의 경우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 세입자가 건물 관리인이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운 수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 ☞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출신 국

가 때문에 수리 요청을 거부당했으며, 다른 국가 출신의 세입자들은 수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임대 계약서에 “애완 동물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서비스 동물 또는 정서적 도움을 주는 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해당 장치가 부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 경우 임대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무효화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 점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주 점유자와 오랜 관계를 맺어 왔고 공동 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가정 파트너에게 계승 권한 허용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세 규정에는 가정 파트너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물 관리자가 이전의 이사 요청은 허용했으면서, 자격을 갖춘 이슬람교도 가정이 비어있는 더 큰 아파트로 옮기겠다는 요청을 거절할 경우.

다음은 인권 침해가 개입되지 않은 세입자 문제의 예입니다.

🏠 건물 소유주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건물에 난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난방은 빌딩 전체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모두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건물 관리인이 임대 신청자에게 “열쇠” 돈을 요구할 경우. 이는 다른 주에서는 주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신청자 모두에게 돈을 요구할 경우 차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건물 관리자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건물의 세입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부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예: DHCR(NYS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Renewal)에 서비스 고발하거나 세입자 협회를 조직하는 방법).

🏠 건물 소유주가 장애를 가진 세입자의 아파트 뿐 아니라 장애가 없는 다른 세입자들의 아파트도 페인트 칠해 주기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세입자가 가진 장애는 건물 소유주의 거부 이유가 아닙니다.

🏠 이슬람교도 가족에게 밀린 집세가 있을 경우 건물 관리자가 해당 가정을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기를 거부하는 경우.

심사 및 불법 질문

주택 제공자는 임대 신청자를 심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 제공자는 해당 신청자가 바람직한 세입자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 과정인 재정 및 신용 상태 자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질문은 모든 신청자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인종, 출신 국가 또는 기타 보호 대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사에는 신용 상태 확인, 직장 및 건물 소유주 추천서, 가정 방문, 인터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어떤 자격 심사 조건을 사용하건, 모든 신청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일반적으로 주택 제공자가 개인의



보호 대상 클래스를 드러낼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은 차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의 예입니다:

- ☞ 당신은 장애인입니까?
- ☞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 ☞ 당신은 동성연애자입니까?
- ☞ 당신은 기혼자입니까?
- ☞ 당신의 인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차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의 추가 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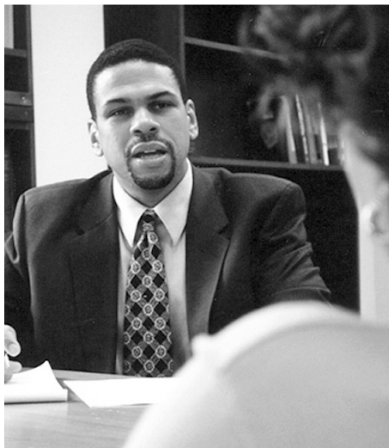
- ☞ 의료 기록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장애인을 위한 주거 장소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
- ☞ 결혼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 ☞ 여권, 출생 증명서 및 기타 나이, 인종, 출신 국가, 또는 외국 국적/시민권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체의 문서.

☞ 신청서와 함께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모든 신청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요건이어야 하며, 운전 면허증과 같이 특정 형태의 신분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뉴욕시 내에서 주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뉴욕시 인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법집행국(Law Enforcement Bureau)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차별 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위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공소 시효가 연장됩니다.



면담을 원하시면 (212) 306-7450번이나 311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사무소까지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다른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차별 주장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판사 앞에서 재판이 열릴 가능성 확인 작업이 실시됩니다.

보복

보복은 특정 개인이 신고를 하거나 공정 주거 조사에서 증인 역할을 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주택 제공자가 세입자 또는 임대 신청인에 대해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서비스 제공 거부,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강제 퇴거 위협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별 대우를 주장했거나 차별 관련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차별 대우 주장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구제책

위원회는 광범위한 구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거주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할 것.
- ☞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 ☞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수용 장치를 제공할 것.
- ☞ 괴롭힘을 중지할 것.
- ☞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과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할 것.
- ☞ 수리 또는 이사 절차 변경 등과 같이 반 차별적 정책을 실시할 것.
- ☞ 공정 주거 교육에 참가할 것.
- ☞ 관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제공할 것.
- ☞ 보호 대상 클래스의 일원들을 위해 주택을 제공할 것.
- ☞ 뉴욕시에 최고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것.

주거 차별에 대항하는 방법

- ☞ 개방적 주거를 지지하고, 차별을 폭로하며, 모든 거주자를 대표하는 건물 또는 지역 사회를 수립합니다.



© Corbis

- ☞ 차별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예) 성희롱 피해 여성을 지원합니다.
- ☞ 배경이 다른 새 이웃을 환영합니다.
- ☞ 건물 및 지역 사회 이벤트를 조직합니다. 예) 다양한 배경의 이웃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는 블록 파티 또는 페어(fairs).
- ☞ 고리대금식 융자 등과 같이 지역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고압적인 부동산 판촉 관행에 반대합니다.
- ☞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익명 또는 실명으로) 압력을 가하는 괴롭힘에 반대합니다. 공정 주거 조직의 실험자로 자원합니다.

유용한 전화번호

고용, 주택, 공공 시설 차별 신고

뉴욕시 인권 위원회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뉴욕시 난방 및 온수 신고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뉴욕시 임대료 제한 아파트와 관련한 건물 유지-보수 및 위반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

(**SCRIE: Senior Citizen Rent Increase
Exemption**)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장애자 임대료 인상 면제(DRIE: Disabled Rent Increase Exemption)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모기지 상담 및 고리대금식 대출 방지

뉴욕시 인권 위원회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718.886.6162번

TTY - 212.504.4115

시소유 주택 관련

정보, 민원,

서비스

NYC Housing Authority (NYCHA)

NYC Citizen Service Center - **311**번

뉴욕시 이외 지역: 212.639.9675번

TTY - 212.504.4115

뉴욕시 임대료 제한 아파트 관련 질문 및 민원

NYS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임대료 정보: 718.739.6400번

연방 주택

건물 소유주/세입자 분쟁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800.669.9777번

연방 주택

건물 소유주/세입자 분쟁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800.685.8470번

TTY - 800.432.2209

뉴욕시 인권 위원회

40 Rector Street
New York, NY 10006
www.nyc.gov/cchr

뉴욕 연결 서비스:

영어: (800) 421-1220 스페인어: (877) 662-4886

311번: 뉴욕시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Center (하루 24시간 주중
무휴) 170개 언어로 발신자 지원이 제공됩니다.

맨해튼 (MANHATTAN)

40 Rector Street, 10th Fl.
New York, NY 10006

① ⑨ ④ ⑤ Rector St. 방향
② ③ ④ ⑤ Wall St. 방향

브롱스 (BRONX)

1932 Arthur Avenue, Suite 203A
Bronx, NY 10457

④ East Burnside Ave 방향
⑤ East Tremont Ave., 방향
West Farms Square.
BX40, BX42 to Arthur Ave.

브루클린 (BROOKLYN)

275 Livingston Street, 2nd Fl.
Brooklyn, NY 11217

② ③ ④ ⑤ Nevins St. 방향
④ ⑤ M B Q DeKalb Ave. 방향
B37, B41, B45, B67 and B103 to Living-
ston 과 Nevins Sts. 방향
B25, B26, B38 B52 Fulton 과 Bond Sts.
방향

스테이트 아일랜드 (STATEN ISLAND)

60 Bay Street, 7th Fl.

Staten Island, NY 10301

스테이트 아일랜드 페리 반대편.

St. George 방향 Staten Island Railroad.
S42, S46, S48, S51, S61, S62, S66, S67,
S74, S76, S78, S81, S84, S91, S92, S96,
S98 -Bay St. 방향, S40, S44, S52, S90,
S94 - Richmond Terrace 방향.

퀸즈 (QUEENS)

153-01 Jamaica Avenue, 203호실
Jamaica, NY 11432

Jamaica Center-Parsons/Archer행

열차는 ④ ⑤ ⑥

Parsons Blvd.와 Hillside Ave행 열차는 ④
Jamaica Center-Parsons/Archer 방향 빠스는
Q25, Q34, Q65.

Parsons Blvd.와 Jamaica Ave.방향 빠스는
Q6, Q8, Q9, Q41, Q54, Q56, Q110.

153번가와 Parsons Blvd. 간 Jamaica Ave.

방향 빠스는 Q30, Q31, Q44, Q83.

Jamaica Ave.와 90 번가간의 153번가 방향
빠스는 Q111, Q112, Q113.



거주 차별은 불법 입니다!

공정 주거는 연방, 주, 시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뉴욕시 인권법 (THE 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 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제 또는 인식상의 인종, 신조,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유무, 성별(성적 정체성, 성희롱 포함), 성적 성향, 결혼 여부, 중성성, 또는 시민권 지위, 합법적 직업, 또는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때문에 주택 제공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MICHAEL R. BLOOMBERG, 시장
PATRICIA L. GATLING, 위원 / 위원장

본인이 거주 차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311번으로 뉴욕시 인권 위원회에 연락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nyc.gov/cchr를 방문해 주십시오.

부동산 전문가 및 주택 서비스 에이전시 포스터. 위원회에 연락하시면 영어 또는 스페인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